



## 자 격 관 리



# I. 가입자 자격관리 일반

## 1. 국민연금 가입대상

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. 다만, ①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 및 「별정우체국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, 군인,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직원, ②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\*, ③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(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)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

\* 특수직종근로자

- 광원 : 상시 갯내 종사 직종에 근무하는 자로서 입갱수당을 받는 자
- 부원 :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자

## 2.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

국민연금의 가입자는 크게 당연(의무)가입대상과 임의가입대상으로 구분된다. 가입과 탈퇴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당연가입대상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근무여부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함.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1/2씩 분담한다는 점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 가장 큰 차이가 있음. 한편, 가입과 탈퇴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의가입대상도 가입연령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.

### 가. 사업장가입자

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1/2씩 분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격의 취득, 상실, 보험료 납부 등 모든 관리가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.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음.

-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(당연적용 사업장)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. 단, 18세 미만 근로자 및 의료·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수급자는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

※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당연적용시기

- 법인사업장 또는 전문직종 사업장 : 2003. 7. 1.
- 2003. 7. 1. 현재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: 2004. 7. 1.
- 그 외 나머지 5인 미만 사업장 : 2006. 1. 1.

\* 근로자: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(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을 포함)임.

다만, 다음의 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함.

•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

※ 단,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,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에 포함

•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

※ 단,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,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강사 및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근로자에 포함하며,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본인이 취득 신청한 자도 근로자에 포함

## 나. 지역가입자

-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됨.
- 다만, ① 퇴직연금등수급권자\*,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\*\*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수급자, ③ 납부이력이 없고,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자, ④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

국민연금법 제9조제4호 개정(2016.1.1. 시행)에 따라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적용제외,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입대상임

-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뿐 아니라 가입 및 변경 신고, 보험료 납부 등을 모두 본인이 수행.

\* 퇴직연금등수급권자

-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공무원해보상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 또는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퇴직연금,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퇴역연금, 퇴역연금일시금, 「군인재해보상법」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
- ‘퇴직연금공제일시금’ 수급권자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나,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

2016.1.2. 이후 퇴직한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이므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(종전 재직기간 요건은 20년임)

※ 단, 군인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아 재직기간 요건이 20년임에 유의

\*\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(이하 “기초수급자”)
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여 급여를 받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등이 있음

다. 임의가입자

-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서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
-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\* 이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으로 결정. 단, 기초수급자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으로 결정하되,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기준소득월액\*\*으로 결정

\* 2025.4월 ~ 2026.3월 적용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: 1,000,000원

\*\* 2024.7월 ~ 2025.6월 적용 하한액 : 390,000원

\*\*\* 2025.7월 ~ 2026.6월 적용 하한액 : 400,000원

-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이므로 연속하여 6개월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

## 《 임의가입신청대상 》

- ◇ 퇴직연금등수급권자
- ◇ 기초수급자(2016.1.1. 이후)
  -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함  
(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대상임)
  -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재직하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며,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 가능
- ◇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
  - 타공적연금가입자, 사업장가입자,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
  -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
  -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
  -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◇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 
(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)

## 라. 임의계속가입자

- 60세 도달로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, 가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60세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로 사업장·지역·기타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
-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가능. 다만, 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, ②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, ③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
-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,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,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가입자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
  - \*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(기준소득월액의 9%) 전액 본인 부담
-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이므로 연속하여 6개월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

< 가입종별 우선순위 >

- 국민연금 가입 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,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되며, 가입 종별 또한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

① 사업장가입자 → ② 지역가입자

\* 임의·임의계속가입자는 당연(의무)가입 대상이 아님

- 즉,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, 종전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등은 가입 종별 변동이 있더라도 연결되어 합산 관리됨.

## ※ 국민연금 가입자의 분류

| 종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류                       | 가 입 요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료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당<br>연<br>가<br>입 | 사<br>업<br>장<br>가<br>입<br>자      | 당연적용<br>사업장가입자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</li> <li>- 단, 18세 미만 근로자 및 의료·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,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지<br>역<br>가<br>입<br>자           | 당연적용<br>지역가입자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로서 사업장 가입자(타공적연금가입자 포함)가 아닌 자</li> <li>다만,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없는 배우자, 타공적연금수급권자 및 그 소득없는 배우자, 기초수급자* 등 제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0. 6월까지 3%</li> <li>- 2000. 7월부터 매 1년 단위로 1%씩 증가</li> <li>- 2005. 7월부터 9% 적용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례적용<br>지역가입자<br>(가입은 임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'95. 7. 1.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농어업인 으로서 '95. 12. 31.까지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된 자</li> <li>■ '99. 4. 1.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2000. 3.31.까지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된 자</li> <li>※ 1934. 4. 2. ~ 1939. 4. 1. 출생자</li> </ul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임<br>의<br>가<br>입 | 임의가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장 및 지역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60세 이전에 신청하여 가입된 자</li> <li>- 퇴직연금등수급권자, 기초수급자*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0. 6월까지 3%</li> <li>- 2000. 7월부터 매 1년 단위로 1%씩 증가</li> <li>- 2005. 7월부터 9%</li> </ul>    |
|                  | 임<br>의<br>계<br>속<br>가<br>입<br>자 | 사업장임의<br>계속가입자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된 자(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기초수급자* 제외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 임의<br>계속가입자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인 자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된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0. 6월까지 3%</li> <li>- 2000. 7월부터 매 1년 단위로 1%씩 증가</li> <li>- 2005. 7월부터 9%</li> </ul>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임의<br>계속가입자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장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60세 이상인 자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된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, 종전의 기초수급자는 2016년1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“생계급여 수급자” 또는 “의료급여 수급자(보장시설 수급자 포함)”로 조정

## Ⅱ.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관리

### 1. 사업장 신규적용

#### 가.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

-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
※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. 다만,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

#### 나. 사업장 적용일

-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때로 적용

근로자 :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(법인의 이사 및 기타 임원 포함)

#### 다. 신고

- (1) 신고의무자 : 사업장 사용자
- (2) 신고기한 :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

#### 라. 신고서류

- (1)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
- (2)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
- (3)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(필요시 제출)

#### 마.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(1) 4대보험 공통신고 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
  - ※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- (2) 사용자 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

## 2.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

### 가. 변경대상

- 사업장 신고일 이후에 사업장 명칭, 주소, 연락처 등이 변경된 사업장으로, 사업장의 동일성(법인격 등)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

### 나. 신고

- (1) 신고의무자 : 사업장 사용자
- (2) 신고기한 :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

### 다. 제출서류

-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
  -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

## 3. 사업장 탈퇴

### 가. 탈퇴대상

- (1)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
- (2)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
- (3)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
- (4) 법인사업장 중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가입된 사업장

### 나. 사업장 탈퇴일

-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
- 휴업일 당일 또는 폐업일의 다음날(폐업일이 1일인 경우 1일로 적용)
- 그 외에는 업무종료일의 다음날

## 다. 신고

- (1) 신고의무자 : 사업장 사용자
- (2) 신고기한 :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
- (3) 제출서류
  -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
    -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(휴업사실증명원 등) 제출
  -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

## 라. 사업장 탈퇴신고(신청)시 유의사항

- (1) 휴업기간 중 가입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이 지급될 경우 탈퇴신고를 할 수 없음
  -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는 탈퇴신고대상에서 제외함
- (2) 휴업기간 종료 또는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조업이 재개된 경우 재가입 신고를 하여야 함
- (3) 통·폐합사업장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
  - 합병 후 사업장을 흡수한(신설) 사업장은 흡수된(소멸) 사업장의 가입자에 대해, 자격상실일과 동일한 일자로,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함

## 4.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

### 가. 신청대상

- (1)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,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일체 이면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
  - 보험료 사후 정산을 위한 건설현장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경우 포함
  - ※ 분리적용 신청 시 사업장별로 신고·납부
- (2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  - (가)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사업장
  - (나)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사업장

## 5.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

### 가. 신고대상

#### (1)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

※ 18세 미만 근로자 및 기초수급자(의료·생계급여)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,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

#### (2)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고,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

#### <개정 전·후 비교>

| 개정 전(前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후(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내부 업무기준에 명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법령에 명시(시행령 제2조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<br/>: 월 20일 이상 근로 시</li> </ul>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18. : 월 8일 이상 근로 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<br/>: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8.1. - 일반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<br/>: 좌 동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2. - 소득기준 추가(건설·일반 일용근로자)<br/>1.1. :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</li> </ul> |

#### (3)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,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가입

※ 다만, 다음의 대상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포함

-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강사
-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,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
-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(2016.1.1. 시행)

#### (4)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일정소득\*을 넘어 연금지급이 정지된 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정지된 때

\* 일정소득 : 월 4,106,907원(근로소득공제 전 금액, 2025년 A값 월 3,089,062원 기준)

## 나. 자격취득시기 : ‘각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’로 소급 적용

- (1)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
- (2)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
- (3) 임시·일용·단시간근로자가 당연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
- (4)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(대학강사 제외)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

※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취득신고서 제출 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

## 다. 제출서류

- (1)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
- (2)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
  - 특수직종근로자
    - 광원 : 입갱수당 지급이 명시된 임금대장 사본 또는 갱내작업 종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  - 부원 : 선원수첩이나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해운항만청의 공인을 받은 승무원 명부 등 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## 6.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(정정) 신고

### 가. 신고대상

- (1) 내용변경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
- (2) 내용정정 : 취득일, 상실일, 기준소득월액 등

※ 내용정정 신고는 명백한 착오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한 사정변경에 따른 정정은 불가함에 유의.

## 나. 신고

- (1) 신고의무자 : 사용자
- (2) 신고기한 :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, 내용정정의 경우 착오발견 즉시

## 다. 제출서류

- (1) 내용변경 :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(4대보험 공통내용 변경 신고 시)
- (2) 내용정정 :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(정정)신고서

# 7.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

## 가. 신고대상

- (1) 사용관계 종료(퇴직)
- (2)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
- (3) 60세 도달
- (4) 사망
- (5) 다른 공적연금 가입
- (6) 월 60시간 미만의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경우

## 나. 제출서류

-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

## 다. 자격상실시기

- ‘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’
  - － 다만,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또는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는 그 당일
  - － 계속 근로 중 단시간근로자가 월 60시간미만인 근로자 제외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‘해당 월 기산일’로 상실처리
  - － 또한, 분리적용 사업장간에 진출된 자는 진출당일이 자격상실일임

## 8.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

### 가. 납부예외

- (1) 신청대상 : 다음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
- 휴직중인 경우
  - 산전후휴가·육아휴직, 산재요양

#### 산전후 휴가 납부예외인정 기간

- 우선지원대상(소규모) 사업장인 경우 : 90일(다태아의 경우는 120일)
-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: 최종 30일(다태아의 경우는 최종 45일)

(2) 납부예외 인정기준

-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%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

(3) 제출서류

(가) 연금보험료(☐납부예외신청☐납부재개신고)서

※ 기타 사유로 신청 시 휴직원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### 나.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

- (1)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“납부재개일”로 기재하여 납부재개신고서 제출
- (2) 납부예외자가 휴직(납부예외)기간 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“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” 제출

### 다. 기타 유의사항

- (1) “납부예외일”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임(예: 휴직일 등)
- (2) 휴직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“납부재개예정일”란에 복직예정일 기재
- (3)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(다만,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와 복직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, 복직월 보험료 납부)

## 9.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

### 가. 용어정의

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 
(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)

### 나.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

-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 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,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넘는 경우 소득비율로 조정 후 고지

## 10. 기준소득월액 결정

### 가. 기준소득월액

-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용자가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5조에서 정한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신고한 소득월액(천원 미만 절사)

※ 하한액과 상한액은 매년 3월31일까지 고시하고,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
(2025.7.1.부터 2026.6.30.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,370,000원이며 하한액은 400,000원)

### 나. 소득의 범위

- (1) 사용자(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)의 경우

- 농업·임업·어업소득 및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

- (2) 근로자의 경우

-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

－ 다만, 국외·원양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급여 중 비과세 소득 최대 월 300만원까지는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포함(2020.1.1.취득 또는 납부 재개자부터 적용)

## 다.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

- (1)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함
- (가)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
  - (나) 일·시간·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
  - (다) (가)와 (나)에 따라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
  - (라)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, 소득자료가 있으면 소득자료대로, 소득자료가 없으면 중위수소득\*으로 결정함.

\*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

### (2) 적용기간

- 2024년 12월 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2025년 6월까지 적용
- 2024년 12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2026년 6월까지 적용

## 라.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(소득총액신고)

### (1)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적용기간

#### (가) 결정방법

-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하고 결정
- 사업장에서 신고기한까지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공단에서 결정

#### (나) 적용기간

-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

## (2) 신고 및 결정대상

- 사업장가입자로서 전년도중 1개월 이상 (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)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자(12월 1일 현재 납부예외중인 자 제외)
  - 신고대상 : 개인사업장 사용자, 과세자료착오 및 연말정산 미신고 근로자
- ※ 2009년도부터 과세자료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총액신고를 하지 않음.  
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자료를 직접 입수 처리하여 신고부담을 경감

## (3) 신고기한 및 방법

## (가) 신고기한 및 신고의무자

-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가 신고

## (나) 유의사항

- 근무 중인 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하고,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사업장 분리적용 또는 통·폐합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자격을 상실한 후 현재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과 해당근무일수를 합산하여야 함
- 소득총액신고서상에 신고대상자로 출력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을 그은 후 “상실”이라고 기재하고,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## 마.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의 통지

## (1) 신규취득자의 기준소득월액 통지

- “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”를 매월 고지서에 동봉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

## (2) 정기결정의 통지

- 공단은 매년 6월중에 “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”를 통지하며 사용자는 모든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
  -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

## 바. 기준소득월액 적정신고 확인·정리

### (1) 개요

- 공적자료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관리의 정확성 제고 및 가입자의 권익 보호

### (2) 대상

- 공단 기준소득월액이 공적자료소득보다 낮게 결정된 가입자

### (3) 업무 추진 일정

가) 3월 : 1차 경정과세자료를 활용한 기준소득월액 적정 여부 확인·정리

나) 8월 : 전년도 취득(납부재개)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적정 여부 확인·정리

다) 11월 : 개인사업장사용자 기준소득월액 적정 여부 확인·정리

2차 경정과세자료를 활용한 기준소득월액 적정 여부 확인·정리

### Ⅲ. 지역가입자 관리

#### 1.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

##### 가. 신고절차

- 신고의무자 : 가입자 본인
  - \*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
- 신고기한 :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
- 신고방법 : 전화, 우편, 팩스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방문
  - \* 취득 신고의 경우,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「내 곁에 국민연금」에서도 가능
- 신고서류
  - ①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
    -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
    -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- ②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
    -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.
    - 상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필요시)

##### 나. 취득 시기

| 취득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일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 이상이 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세 생일날   |
|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득발생일     |
| 27세 미만인 자가 27세 이상이 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7세 생일날   |
| 사업장가입자 또는 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상실일     |
|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           | 소득발생일     |
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이 중지된 때<br>(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함) | 중지일의 다음 날 |
|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지급이 정지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정지일     |
|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하게 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일     |

## 다. 상실 시기

| 상실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실일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망일의 다음 날        |
| 국적상실, 국외이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    |
| 사업장가입자 또는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취득일            |
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된 때<br>(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함) | 책정일              |
|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            | 소득이 없게 된 날의 다음 날 |
|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급권 취득일          |
|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급권 취득일          |
| 60세가 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세 생일날          |

## 2. 기준소득월액 결정

### 가. 기준소득월액

-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서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5조에서 정한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신고한 소득월액(천원 미만 절사)
  - \* '24.7월~'25.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,170,000원, 하한액은 390,000원
  - \* '25.6월~'26.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,370,000원, 하한액은 400,000원

### 나. 소득의 정의와 범위

-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
- 소득은 농업·임업·어업·근로·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, 가입자의 소득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함
  - － 사업소득 :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
  - － 근로소득 :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

## 다.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

-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
- 공단은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, 종사업종, 사업장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음

### 【 신고권장소득 】

- 개념
  - 지역가입자의 적정한 소득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 및 사업장 입지조건 등을 감안한 권장소득(성·연령·지역을 감안한 권장소득)에 개인의 사업소득 규모·재산 및 자동차 보유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
  - \* 99. 4월 도시지역연금 확대이후 지역가입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관리를 하기위하여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을 개발하여 2003년부터 업무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
- 의의
  -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는 봉급생활자와 달리 다양한 소득 형태, 소득 발생 특성 등을 가지고 있어 실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에 어려움
  -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, 자동차 등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참작하여 소득을 산정·활용함으로써 적정한 보험료 부담 및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
- 산정방법
  - 사회통계상 자영자의 소득은 관련 소비(지출) 및 재산 등을 통해 평균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
  - 우선 평균개념인 권장소득을 산정하고 개인별로 차별화되는 과세소득 수준과 재산·자동차보유 수준에 의거 권장소득이 감액 또는 증액되도록 하여 어느 정도 개인의 생활수준에 맞는 소득을 산출한 것임

### 3.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

#### 가. 신고대상

- ‘내용변경’은 가입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농어업인 해당여부 등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
- ‘내용정정’은 고의·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하는 것으로서 소급하여 정정

#### 나. 신고절차

- 신고의무자 : 가입자 본인
  - \*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
- 신고기한
  - 내용변경 :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
  - 내용정정 : 착오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
- 신고방법 : 전화, 우편, 팩스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방문
- 신고서류
  - ①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
  - ②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  - 이름, 주민등록번호 : 주민등록표 초본 등
    - 농·어업인 비해당 → 해당 : 국민연금 농·어업인 확인서, 농지원부 등

#### 다. 기준소득월액의 변경

-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,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 신청 가능
  - \* 기준소득월액 하향 신청 시에는 소득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공적·객관적 자료 제출 필요
- 공단에서 변경 결정한 당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변경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됨

## 4. 납부예외

### 가. 제도 개요

- ‘납부예외’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,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
-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
-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

### 나. 신청대상 및 사유

- (1) 사업 중단·실직 또는 휴직 중인 자
  - － 직장퇴사·사업장 부도·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
  - － 학교 졸업 또는 제대 후 취업 준비 중인 자 등
- (2) 군인 : 의무군인으로서 육군·해군·공군, 공익근무요원, 경비교도대원, 전경·의경,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
- (3) 학생
- (4) 재소자 : 교정시설(교도소 및 구치소)에 수용중인 자
- (5) 보호·치료감호시설 수용자 :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
- (6) 1년 미만 행방불명된 자(거주불명등록자)
- (7) 재해·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
  - －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자
  - － 농어업재해대책법·자연재해대책법·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·지원대상이 된 자
  - － 조류독감, 적조현상 등 자연재해 및 사고로 관련업종 종사자의 소득이 감소 기초생활유지가 곤란한 경우

## 다. 납부재개 안내

- 납부예외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,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함
-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입 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, 장애 또는 유족연금 사유 발생 시 소급하여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
## 5.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지원

### 가. 제도 개요

- 지원 대상
  - －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
  - ※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- 지원 기간
  - － 농어업인으로 인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
  - ※ 단, 제외되는 날이 1일인 경우 해당 제외 월은 국고보조 미지원
- 지원 금액
  - － 기준소득월액 1,030,000원을 기준으로 월보험료의 최대 46,350원('25년 기준) 지원
    - 1,030,000원 초과 : 46,350원 정액 지원
    - 1,030,000원 이하 : 연금보험료의 1/2 정률 지원
- 지원방법
  - － 매월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분을 부과하며, 보험료를 납부(연체금 포함 완납 기준, 일부납 제외)한 경우에만 지원됨

### 나. 농어업인의 범위

- 농업, 임업,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
- 농업, 임업 또는 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기간을 합산하여 농어업인 여부를 결정

## 다. 농어업인 확인

- 확인기관 :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구청장·읍장·면장·동장
- 확인서류
  - 농어업인 확인서,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
  - 농지대장(1,000㎡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), 축산업등록증 등
  - 어업관련 서류 (수산업법, 내수면어업법,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면허증, 어업권원부, 어업허가증 및 신고증 등)
- 참고사항
  - 농어업경영체등록자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

## 6.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

### 가. 제도 소개

- 법적 근거
  -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(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) 등
- 도입 목적
  -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 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 기간 증대 추진

### 나. 세부 사항

- 지원 대상
  - 경제적 사유\*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
    - \* 사업중단·실직·휴직
- 재산 및 소득 기준
  - 재산: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미만
  - 소득: 종합소득\* 합 1,680만 원 미만
    - \*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 소득

○ 지원 기간

-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(지원 횟수 제한 없음)

※ 단, 실업크레딧(법령 제한),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보조(유사지원)와 중복지원 불가

○ 지원 금액

- 기준소득월액 1,030,000원을 기준으로 월보험료의 최대 46,350원('25년 기준) 지원

- 1,030,000원 초과 : 46,350원 정액 지원
- 1,030,000원 이하 : 연금보험료의 1/2 정률 지원

○ 지원 방법

- 매월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분을 부과하며, 보험료를 납부(연체금 포함 완납 기준, 일부납 제외)한 경우에만 지원됨

○ 신청 방법

- 본인 신청 시 전화·우편·방문·팩스·사자(使者) 신청 가능

※ (홈페이지·모바일)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신청 시에 지역지원 함께 신청 가능

- 대리인이 신청 시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의 전화·우편·팩스 신청은 불인정

※ 다만, 법정대리인의 신분 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, 대리인의 전화·우편·팩스 신청은 인정



## 징수 및 보험료지원

가입지원실

# I. 연금보험료 부과·결정·정산

## ▶ 개 요

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

## ▶ 업무처리기준

### 1. 징수마감

- 자격변동자료 등 전산입력처리 마감일 : 매월 15일
- 매월 15일 마감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신한 수납자료, 자동이체 신청자료, 선납·분기납, 납부기한연장 및 연체금징수예외 신청 자료 등을 최종 전산에 반영하고 고지 파일 생성

### 2. 징수결정

#### 가. 연금보험료 금액 산정방법

-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보험료 징수
    -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까지
  - 연금보험료금액 결정
    - 가입자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
- ⇒ 연금보험료 =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× 연금보험료율
- ※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1/2씩 분담시 발생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

#### 나. 연금보험료 부과·결정 방법

##### (1) 사업장 당월분 연금보험료 결정

- 당월 납입고지액 = 당월분 금액 + 소급분 증가금액 - 공제금액 - 수납충당액
- 보험료지원사업장은 정기결정금액에서 “전월분 보험료지원금”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

## (2) 지역가입자 당월분 연금보험료 결정

- 당월 납입고지액 = 당월분 금액 + 소급분 증가금액 - 공제금액 - 수납충당액
- 농어업인은 정기결정금액에서 “당월분 국고보조금”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

## 다. 연금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담주체

(1) 사업장가입자 : 본인부담 기여금(4.5%) + 사용자부담 부담금(4.5%) : 9%

## 【사례】 사업장가입자의 경우

## ◆ 기준소득월액이 954,000원인 경우

☞ 근로자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 = 954,000원 × 45/1,000 = **42,930원**  
 ⇒ 보험료 = 기여금(42,930원) + 부담금(42,930원) = 85,860원

## ◆ 기준소득월액이 955,000원인 경우

☞ 부담금 및 기여금 : 955,000원 × 45/1,000 = 42,975원(5원은 절사) ⇒ **42,970원**  
 ⇒ 보험료 = 기여금(42,970원) + 부담금(42,970원) = **85,940원**

(단위 : 원)

| 기준소득월액  | 고지금액   | 부담금(4.5%) | 기여금(4.5%)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954,000 | 85,860 | 42,930    | 42,930    |
| 955,000 | 85,940 | 42,970    | 42,970    |

(2) 지역/임의/임의계속가입자 : 9% 전액 본인 부담

## 【사례】 지역가입자의 경우

## ◆ 기준소득월액이 955,000원인 경우

☞ 보험료 = 기준소득월액(955,000원) × 90/1,000 = **85,950원**

## 라. 납기전 고지(당월 정기 고지파일 생성전에 당월분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)

(1) 신청대상 : 현재 가입중이고 당월분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

\* 자격 소급 취득 및 상실로 소급분 보험료만 존재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

(2) 신청 및 처리 가능일

- 원칙 : 매월 초일 ~ 당월 자격마감일(15일 경)까지 가능
- 예외 : 신규 사업장(또는 취득자)의 경우 납기전 고지 등록 시 고지서 발급은 익일부터 가능

#### 마. 연금보험료 수시고지 발행

- (1) 내방 신청시 :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서 발급(발행 대행 가능)
- (2) 유선 신청시 : 건강보험공단으로 고지서 발급 요청 안내(발행 대행 불가)
- (3) 자동이체자의 경우 연금공단에서 수시고지서 발행 불가  
(사유 : 수시 고지서 발행 시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이체 출금파일 미생성)  
단, 건보공단에서는 수시고지서 발행 가능

### 3. 납부기한

가. 당월 연금보험료 :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

나. 분기납 :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

다. 선납 : 선납기간의 첫 달 10일

라. 반납금·추납보험료 :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

#### ▣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의 변경

| '88.1월분 ~ '89.3월분 | '89.4월분 ~ '99.3월분 | '99.4월분~ 현재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매월 10일            | 매월 말일             | 매월 10일      |

### 4. 자동이체 및 이메일 감액

가. 자동이체자에 대한 감액

#### 【 보험료 감액 기본원칙 】

- 대상 : 지역·임의(계속)가입자중 자동이체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전원
- 방법 : 일정액 230원을 매월 연금보험료에서 균등 감액하여 자동이체 의뢰·실행

- \* 분기납자의 자동이체 출금 시 월납자와 동일한 230원 감액
- \* 미납분 분할납부(일시납 포함)시 각 완납 월별 230원 감액
- \* 소급으로 합산 고지 시 해당 합산(소급) 고지 월 1개월만 230원 감액

## 나. 이메일고지 신청자에 대한 감액

### (1) 이메일고지 감액 기본원칙

- 대상 : 사업장 및 지역, 임의(계속)가입자 중 이메일 고지 신청자
- 방법 : 매월 연금보험료에서 **200원을 균등 감액** 후 고지  
     ⇒ 이메일 고지에 따른 절감 비용은 모든 납부자가 동일하므로 감액은 정률방식이 아닌  
     정액방식 적용
- 시기 : **2008. 9월분 보험료부터** 최초 적용

### (2) 감액 적용대상

- 사업장 및 지역, 임의(계속)가입자의 이메일고지 해당월 연금보험료
- 선납·반납금·추납보험료·미납보험료 분할고지분은 이메일고지 감액 미적용
- 분기납의 경우 분기납 고지 시 해당월에 한해 200원 감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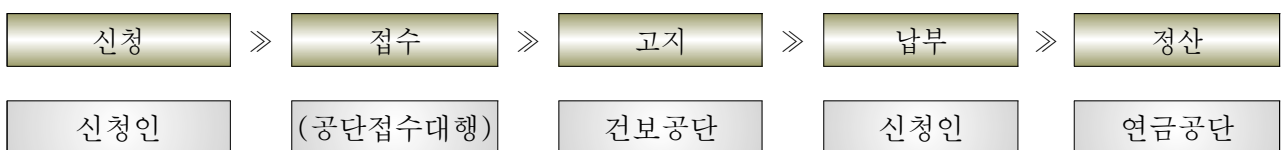
## 5. 연금보험료의 선납

### ▶ 개 요

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가입자를 위한 납부편의 제도

### ▶ 업무처리기준

#### 가. 신청 프로세스



## 나. 신청(신청인) 및 접수

(1) 신청대상 :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자

(2) 신청기한 : 선납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

※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선납시작월의 전달 15일까지로 명시  
 다만, 선납 시작월의 전달 15일까지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고지 발송, 15일 이후부터  
 말일까지 선납신청 시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즉시 선납고지서 교부

(3) 신청가능기간

- 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되, 최장 1년(12개월) 이내 가능

※ 단, 2012.7월 이후부터는 신청당시 50세 이상인 경우,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신청 가능

(4) 접수 처리기관 : 건강보험공단(공단 : 접수대행)

다. 고지(건보공단) 및 납부

(1) 고지금액(=추산선납보험료 총액)

- 신청당시 월 보험료에서 신청년도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감액금액을 공제한 월 보험료의 총액

$$\text{추산선납보험료} = \text{기준보험료}^{1)} - \text{기준감액금}^{2)}$$

1) 기준보험료 : 신청당시 월 보험료

\* 농어업인 : 연금보험료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

2) 기준감액금 : 기준보험료 × 선납개월수 ×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/12

$$\text{기준감액금 산정식} = c \times r \times 1 / 12 \times n$$

c : 기준보험료, r : 신청당시 1년만기 이자율, n : 선납월수

(2) 납부기한 : 선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

\*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선납 직권해지→월납자로 관리

(3) 납부방법 : 전자수납 전용 고지서, 입금전용계좌(가상계좌)

6.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

▶ 개요

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해소하고자 함

## ▶ 업무처리기준

## 가. 신청 대상

(1)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당월분 연금보험료 이상인 경우

-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가능
- 연금보험료 당월분(0)/소급분(有) 사업장(가입자) 소급분 분할 가능

- (신청가능) 2012. 1월분 당월분 연금보험료 100만원, 소급분 연금보험료 100만원, 총 납부할 금액 200만원 → 소급분 100만원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 가능
- (신청불가능) 2012. 2월분 당월분 연금보험료 100만원, 소급분 연금보험료 90만원, 총 납부할 금액 190만원 → 소급분 분할납부 불가

(2) 소급분 분할납부 신청 불가

- 사업장 : 건설현장사업장, 납기전고지 사업장
- 가입자 : 선납·분기납 신청 중인 자, 납기전고지자
  - ※ 지역가입자는 소급분 분할납부 중에는(10회차 분할납부가 종료되기 전) 추가 분할납부 신청 불가, 사업장은 추가로 발생한 소급분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최초 분할 신청 가능횟수 범위 내에서 분할 변경 가능

## 나. 신청서 접수기관

- 국민연금공단(건강보험공단은 접수대행)

※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접수 대행

-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접수 ➡ 국민연금공단 등록 및 처리 ➡ 건강보험공단 고지(고지서 출력 또는 가상계좌 등록)

## 다. 신청기한

(1)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일까지

- 단, 자동이체자는 출금의뢰 마감일(D-2일)까지
  - ※ 선출금중인 사업장과 가입자는 1일~10일 사이 신청 불가

(2) 신청기한 내에는 취소 가능

- 단, 지역가입자는 1회차 납부기한 경과 후 소급분 분할납부 신청 취소 불가

사업장은 1회차 납부기한 경과 후 잔여일시납 및 분할횟수 변경 가능

## 라.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
### (1) 접수기간

- 정기고지에 반영 : 전월 납부마감일 익일(11일) ~ 자격마감일(15일)
- 정기고지 이후 수시 반영 : 자격마감일+1일~납부마감일의 2영업일 전까지
- 단, 자동이체자는 출금의뢰 마감일(D-2일)까지

### (2)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웹EDI, 전화(유선신청 허용)

## 마. 분할 결정방법

### (1) 분할횟수 : 10회 이내로 신청

### (2) 분할방법

- 사업장별 소급분 분할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납부 결정대상
- 해당 사업장의 분할금액은 가입자 소급월별 연금보험료 금액을 신청 횟수에 따라 (10회 이내) 균등분할하고, 10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월에 합산하여 배분

## 바. 연체금 부과

각 회차별 납부기한일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회차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연체금을 부과

- 분할납부 회차별 연금보험료 고지 월의 최종 징수결정금액을 기준으로 연체금을 산정·부과

➤ (예시) 2020. 3월 당월분 10,000원, 소급분 2회차 5,000원인 사업장에서 2020. 5. 10. 납부시

▶ 연체금 = (10,000원 + 5,000원) × 1/1500 × 30

※ 기존 연체금 산정방식과 동일

## 7.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(2016.06.23.시행, 2020.1.16.개정)

### ▶ 개 요

연금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연체금 가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부

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도록 법령 개정

## ▶ 업무처리기준

## 가. 연체금 계산방식

| 구분                | 기준(월할계산방식)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(2016.6.23.)                     | 개정(2020.1.16)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▷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| 1개월까지<br>보험료의 3%가산                | 1일 경과마다<br>1천분의 1 가산<br>(최고 3% 이내) | 1일 경과마다<br>1천500분의 1 가산<br>(최고 2% 이내) |
| ▷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| 1개월 경과마다 1%<br>가산(2~7개월)<br>최고 9% | 1일 경과마다<br>3천분의 1 가산<br>(최대 9% 이내) | 1일 경과마다<br>6천분의 1 가산<br>(최대 5% 이내)    |

## 나. 연체금 부과·고지 기준

## (1) 원칙 : 일 단위 사후정산방식

-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가산
- 체납된 연금보험료 완납일 또는 매월 15일 기준 연체금 사후정산 부과
- 경과한 연체일수에 대한 연체금 고지

## (2) 정기고지서

- 당월분 보험료와 전월에 보험료가 완납된 이전월 연체금 합산고지
- 합산고지된 당월분 체납될 경우 이전월 연체금은 익월의 당월분 보험료에 합산 고지되고 합산고지된 익월 당월분 미납 시 익익월에 합산고지함

## (3) 정기독촉고지서

- 최초 독촉고지서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고지

## 8. 과오납급 충당 및 반환

## ▶ 개 요

소급 자격변동처리 및 이중·착오수납에 의해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충당순위에 따라 충당처리후 남은 잔여액은 반환결정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처리

## ▶ 업무처리기준

### 가. 과오납금 충당 처리

- 충당순서: 체납처분비 > 급여의 환수금과 연체금 > 미납된 연금보험료의 연체금과 보험료 > 향후 납부하여야 할 1개월의 연금보험료(가입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충당 불가)

### 나. 과오납금 반환대상자(다음 순서대로 반환)

- (1) 납부의무자 : 개인사업장 사용자, 법인, 가입자 본인
- (2)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자(선순위자에게 지급)
  - \*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으로 법 제77조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포함
- (3) 납부의무자의 상속인

### 다. 이자산정

- (1) 이자가산대상 징수금
  - 연금보험료,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
  - 반납금, 추납보험료의 과오납금
  - 환급대상 개별납부 기여금, 선납 잔액
    - \* 단, 환급대상 개별납부 기여금은 충당불가, 반환가능
    - \* 선납잔액은 신청인의 동의하에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에 충당가능
- (2) 이자율 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율
  - 이자계산기간
    - 자격변동신고의 경우: 자격변동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
    - 자격변동 “신고” 이외의 경우: 과오납부 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

## Ⅱ. 반환일시금 반납금

### 1. 반납금 납부 신청

#### ▶ 개 요

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지급받았던 금액에 반납금 납부신청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

#### ▶ 업무처리기준

##### 가. 신청요건

(1)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

※ 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해당 재직기간에 포함된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은 반납금 신청 제외  
【2012. 7. 1. 시행】

○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확인서 상의 재직기간 중 “재직기간소급통산” 등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반환일시금과의 중복기간 제외 처리

(2) 가입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

- 납부예외자도 신청 가능
- 60세 이후에도 가입중이면 신청 가능
- 자격 상실일과 반납금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신청 유효

##### 나. 신청서 처리절차

(1) 신 청 : 공단의 소정양식에 의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

- 사자(使者) 또는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유선 통화를 통해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등 안내 후 고객접촉이력 등록
  - 대리 신청의 경우 임의(임의계속)가입자 신청서 접수방법 준용

※ 가입기획부-3407호(2011.11.17.)“반납금/추납보험료 신청 접수방법 등 개선 시행”

(2) 방문, 우편, FAX, 행정안전부 홈페이지(정부24), 공단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디지털 ARS

(3) 재신청 시 유선접수 (※ 신청 취소이력 또는 1 순위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유선접수 가능)

## 2. 반납금 납부방법 및 금액산정

### ▶ 개 요

반환일시금 반납 시 가입기간에 따른 분할납부 가능횟수를 규정하고 납부하여야할 반납금 금액산정 방법을 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

### ▶ 업무처리기준

#### 가. 일시납부

(1) 일시납부금액 : 반환일시금 원금에 일시반납이자를 합한 금액

(2) 일시반납이자

- 계산기간 :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
- 계산방법 : 월수에 의하되, 연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
- 이 자 율 :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

(3) 일시납부 신청 후 미납 시 추가가산 이자

- 계산기간 : 납기 내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재발행 고지서 상 납부 기한일이 속하는 달까지
- 계산방법 : 월수에 의하되, 연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
- 이 자 율 :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

#### 나. 분할납부

(1) 분할납부금액 : 각 분할 납부금(=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단위 반환일시금)에 분할반납이자를 합한 금액의 총합계

(2) 분할납부이자

- 계산기간 : 각 분할 납부금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

- 계산방법 : 월수에 의하되, 연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
  - 이 자 율 : 해당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
- (3) 분할납부 신청 후 미납 시 추가가산 이자
- 계산기간 : 납기 내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재발행 고지서 상 납부 기한일이 속하는 달까지
  - 계산방법 : 월수에 의하되, 연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
  - 이 자 율 :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
- (4) 납부횟수 : 아래에 해당하는 횟수의 범위에서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
-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: 3회
  - 가입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: 12회
  -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: 24회
- ※ 반환일시금 지급기간 중 최초 월부터 순차적으로 분할 신청

## 다. 납부기한

- (1) 납부기한 : 법정기한으로 매월 말일로 고정
- 정기고지 : 고지서 발송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(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)
  - 수시고지 : 납부신청일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다음달 말일 중에 선택
- (2) 실제 납부가능일
-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달 첫 영업일까지 납부 가능
  - 납부방법 변경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변경 대상 최초월분의 실제 납부가능일
  - 자격상실에 의한 납부기한
    - 사망 : 사망일
    - 반환일시금 지급 : 반환일시금 지급일
    - 노령연금 지급결정 : 노령연금 지급결정일

### 3. 반납금액 정산 및 가입기간 복원

#### ▶ 개 요

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며 일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함

#### ▶ 업무처리기준

##### 가. 납부금액 정산(충당순서)

(1) 분할납부 시 납부한 회차 별로 반납금액 충당 처리

(2) 추가가산이자 → 분할납부이자(2012.7.1. 신청 건부터 미 산정) → 반납원금 순으로 충당

○ 반납원금은 반환일시금과 반납(분할반납)이자를 각각 금액비율로 안분 처리

##### 나. 가입기간 계산

(1) 가입기간 복원 원칙

○ 가입기간 복원 원칙

－ 일시납부 시 그에 상응하는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산입, 복원

－ 분할납부 시 납부한 회차에 속한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산입, 복원

### Ⅲ. 추납보험료

#### 1.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

##### ▶ 개 요

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10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

##### ▶ 업무처리기준

##### 가. 신청요건

- (1)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상 납부한 날\*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존재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는 자

\* 연금보험료 납부일 결정 기준

-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복원(추가)된 수납일
-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반환일시금의 산정기초가 된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
- 과오납금 충당에 의하여 연금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최종 수납일을 납부일로 인정(단, 최종 수납일이 최초 고지월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)

- (2) 자격을 재취득(납부예외 제외)하거나 납부재개하여 신청일이 속한 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있는 가입자

-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중이면 신청 가능
- 자격상실일과 추납신청일이 동일한 경우 인정

※ 신청대상이 아닌 자 : 자격상실자, 납부예외자, 노령연금수급자

##### 나. 추납 대상기간 요건

##### (1) 적용제외기간

(가) 무소득배우자(1999. 4. 1. 이후)

-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기간 중 소득자료 보유자 처리

- 제도시행 이전 자격정리 기간에 대하여는 자격확인 당시 자격관리 기준에 의해 적용제외 처리된 것으로 인정하여 추납신청 대상기간 포함
- 제도시행일 당시 소득자료 보유중이나 무소득배우자 사유로 적용제외(무소득간주) 중인 경우도 향후 자격확인 통해 자격변동되기 전까지 현재 자격상태 인정
- 적용제외사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경우 처리
  - 기존 자격정리에 의해 무소득배우자 등 추납가능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은 추납신청 인정
  - 향후 가입확인대상 확인 및 자격상실 시 적용제외사유 두 가지 이상 중복된 경우 추납가능사유 우선적용(단, 국외이주 사유에 의한 적용제외기간은 제외)

[예시]

- 2001년 사업장 가입 10개월 후 공무원연금 가입으로 상실
- 2017. 1.31. 공무원 퇴직(재직기간 15년, 퇴직연금수급권 취득)하여
- 2017. 2. 1. 가입확인대상 발체, 2017.10. 1. 임의가입한 경우  
⇒ 무소득배우자 사유와 퇴직연금수급권자 사유 중복된 기간[2017. 2. 1. ~ 9.30(8개월)]  
대하여 무소득배우자 사유 우선적용 추납대상기간 포함

(나) 기초수급자(2001. 4. 1. 이후)

- 공단보유자료에 의해 기존에 기초수급자 사유로 적용제외 자격정리된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, 공단보유자료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신청자의 입증서류로 확인
- 2001. 4. 1. 전에 기초수급자 책정된 자로 2001. 4. 1. 이후 중지된 자는 2001. 4. 1. ~ 중지일이 속하는 달까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6.1.1.이후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자는 급여종별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(추납대상기간) 결정됨
  -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
  - 보장시설 수급자

(다) 1년 이상 행방불명된자(2008. 1. 1. 이후)

- 시행령 제20조(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)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적용제외된 기간
- 기존 주민등록변동자료에 의해 자격정리(적용제외)된 기간을 추납대상기간으로 인정하고 추후 거주불명등록일, 전입일 변경 등 주민등록자료 변동에 따른 자격정리 시 변동된 자격으로 추납결정내역 재산정

(라) 18세미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된 기간(2015. 7. 29. 이후)

- 법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여 적용제외된 (사업장 종사)기간
- 사업자가입자 적용제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사업장의 사용관계 종료일이 속하는\* 달까지 인정
- \*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기관상실일의 전일을 말함
- 제출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우선하고, 해당 서류 없는 경우 고용·산재자격이력내역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자료로 확인

(마) 추납대상 적용제외기간 적용례

-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(최초 수납일)이 속하는 월이 적용제외월인 경우 추납 신청대상 적용제외기간에 포함
- 동월에 납부예외와 적용제외가 동시 존재하는 경우는 납부예외기간으로 산정

[예시]

- 2010.4.1. 납부예외 취득, 2010.4.25. 무소득배우자 상실
- 2010.4.1. 무소득배우자 상실, 2010.4.25. 납부예외 취득
- ⇒ 2010. 4월은 납부예외기간으로 산정

- 적용제외 중 자격 취득 시 “취득월 납부 미희망”월도 적용제외월에 포함. 단, 동월에 자격상실한 경우 추납신청은 인정하나, 추납신청대상기간에서 제외
- 소득결정 중 상실월은 이전 가입종별의 가입기간 포함(초일 상실자는 상실, 적용제외사유) 여부에 따라 해당 월 추납대상기간 포함여부 확인
- 적용제외사유가 동월에 변경되는 경우 해당월은 추납신청대상기간에 포함

[예시]

- 2010. 4. 1. 무소득배우자 상실, 2010. 4.25. 적용제외사유(국외이주)로 변경
- ⇒ 2010. 4월은 추납신청대상 적용제외기간으로 산정

(2)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(법 제 91조 제①항)

- 납부재개 시 “취득월 미고지”월도 납부예외기간에 포함
- ※ 단, 해당월은 추납 신청은 가능하나, 동월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추납 신청대상기간에서 제외됨 (※ 해당 추납 신청은 유효함)
-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기간은 추납 신청 가능
- 신청대상 제외기간 : '88~'89.4 무보수휴직자(반액납부자)로서 납부예외기간

(3) '88. 1. 1. 이후 병역의무수행기간(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)

#### 다. 신청서 처리절차

(가) 신청 : 공단의 소정양식에 의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

○ 사자(使者) 또는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유선 통화를 통해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등 안내 후 고객접촉이력 등록

－ 대리 신청의 경우 임의(임의계속)가입자 신청서 접수방법 준용

(나) 방문, 우편, FAX, 행정안전부 홈페이지(민원24), 공단 홈페이지 (2012. 10. 8. 시행), 모바일 앱, 디지털 ARS

(다) 재신청 시 유선접수 (※ 신청 취소이력 및 1순위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유선접수 가능)

## 라. 추납보험료 고지

### (1) 정기고지

#### (가) 고지대상

- 납부기한이 당월 말일인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청자
  - 상실자(사망자 제외) : 계속 고지
  - 분할납부 : 계속 미납하더라도 최종회차 납부기한까지 계속 고지
  - 징수권 소멸규정 적용(단, 소멸시효는 제외)
    - 고지대상 제외 - 사망자, 반환일시금 지급자, 노령연금 지급결정자
    - ※ 사망자, 노령연금 지급결정자는 본부 직권 고지제외 처리, 단 반환일시금 지급자는 지사 개별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

- 정기고지 전 지사에서 수시고지 발행하였더라도 고지작업일 기준 미납한 경우는 정기고지 대상에 포함

#### (나) 발송일자 : 납부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자격변동입력마감일 익일(11일경)

### (2) 수시고지 : 고지 발급 신청에 따라 지사에서 우편 또는 직접 교부

#### (가) 납부기한(납기내 기한) : 매월 말일(휴일인 경우 그 익일)

- 노령연금 수급예정자인 경우 납부기한을 반드시 상담 후 입력

## 2.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및 금액산정

### ▶ 개 요

추납보험료 납부 시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에 따른 분할납부 가능횟수를 규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추납보험료 금액산정 방법을 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

### ▶ 업무처리기준

#### 가. 일시납부

- (1) 일시납부금액 :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의 가입종별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

#### (가) 월중 가입종별이 변경된 경우 :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

※ NPIS : 징수업무 → 반납금/추납보험료 → 2.추납보험료 신청 및 고지 발부 → 산정 및 납부신청

- (2) 납부횟수 : 1회

(3) 일시납부 신청 후 미납 시 추가가산 이자

- (가) 계산기간 : 납기 내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재발행 고지서 상 납부 기한일이 속하는 달까지
- (나) 계산방법 : 월수에 의하되, 연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
- (다) 이 자 율 :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

나. 분할납부

(1) 분할납부금액 : 일시 납부금액(추납보험료 원금)에 분할 납부이자를 더한 금액

(2) 분할납부이자

- (가) 계산기간 : 각 분할납부금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
- (나) 계산방법 : 월수에 의하되, 연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
- (다) 이자율 :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

(3) 분할납부 신청 후 미납 시 추가가산 이자

- (가) 계산기간 : 납기 내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재발행 고지서 상 납부 기한일이 속하는 달까지
- (나) 계산방법 : 월수에 의하되, 연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
- (다) 이 자 율 :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

(4) 납부횟수 : 추납대상기간에 따라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가능

[예시]

- 추납가능기간(납부예외 + 적용제외) 55개월, 추납신청기간 55개월  
⇒ 분할납부 가능 횟수 55회
- 추납가능기간(납부예외 + 적용제외) 90개월, 추납신청기간 80개월  
⇒ 분할납부 가능 횟수 60회

다. 연금보험료 상한액 적용

(1) 적용대상 : 임의가입자, 기타임의계속가입자

(2) 적용방법 :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이 상한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\* 상한 기준소득월액의 연금보험료를 적용하여 금액 산정

\* 상한 기준소득월액 : 해당 연도 A값의 천원 미만 절사 금액

(3) 적용시기 : 해당 연도 1월~12월까지(신청일 기준), ※ 2019.1.22.변경

## 라. 납부기한

- (1) 납부기한 : 법정 기한으로 매월 말일로 고정
  - (가) 정기고지 : 고지서 발송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
    -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
  - (나) 수시고지 : 납부신청일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다음 달 말일 중에 선택
- (2) 실제 납부가능일
  - (가)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달 첫 영업일까지 납부 가능
  - (나) 납부방법 변경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변경 대상 최초월분의 실제 납부가능일
  - (다) 징수권 소멸에 의한 납부기한(= 해당 일까지 납부분 인정)
    - 사망 : 사망일
    - 반환일시금 지급 : 반환일시금 지급일
    - 노령연금 지급결정 : 노령연금 지급결정일

## 3. 추납보험료 정산 및 가입기간 산입

### ▶ 개요

추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을 정산하여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으로 산입함

### ▶ 업무처리기준

#### 가. 납부금액 정산(충당순서)

- (1) 분할납부 시 납부한 회차별로 정산 원칙
- (2) 추가가산이자 → 분할납부이자 → 추납보험료 원금 순으로 충당

#### 나. 가입기간 계산

- (1) 가입기간 산입 원칙
  - 추납보험료 신청 당시 연금보험료 금액으로 납부된 추납보험료 원금을 정산하여 해당월 만큼 가입기간에 산입
  - ※ 가입기간 산입월수 = 추납보험료 납부원금 총액 / 신청월 보험료
- (2) 분할납부 중 미납회차 발생 시 해당회차에 속한 가입기간은 미 복원 처리

## IV. 실업크레딧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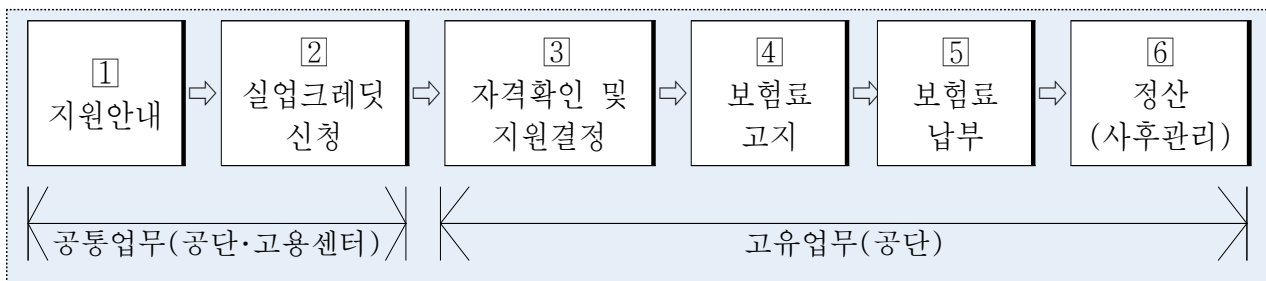
### 1. 제도 개요

#### □ 도입 목적

-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,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
-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(이하 “실업크레딧”이라 함)

- (지원대상)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
  -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 추진
  - \* 고액자산가의 판단 : 재산 및 소득의 보유수준 확인
- (지원기간)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,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  - \* “실업-재취업” 반복시 지속수급 가능
- (지원방법) 연금보험료의 25%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 추가산입
  - \* 고용부 일반회계(25%), 고용보험기금(25%), 국민연금기금(25%)에서 균등 부담
  - \*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에 따라 결정되며,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1/2로 해당 금액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70만원(2024년 기준)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및 지원
- (시행일) 2016. 8. 1.

#### □ 업무처리 흐름 및 처리기관



## □ 실업크레딧 용어의 정의

### ○ “실업크레딧 신청”

-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기 위한 신청

### ○ “구직급여”

- 실업급여의 일종으로,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그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

### ○ “구직급여종료일”

- 「고용보험법」 제50조 및 제69조의6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종료일
  - 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」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

### ○ “인정소득”

-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
-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%

### ○ “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” (구직급여가 지급된 누적 30일)

-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에 해당하는 기간(= “고지산정기간”)

### ○ “지원횟수” (실업크레딧 신청 시 지원(납부) 가능한 횟수)

### ○ “실업크레딧 해당·비해당자”

-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자격 심사를 통해 실업크레딧 해당·비해당으로 결정된 자

### ○ “본인부담 연금보험료”

- 인정소득에 따라 산정된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

### ○ “추가산입기간”(신청과 납부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)

### ○ “납부유효기한”(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)

- 정기고지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한

## 2.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

### ① “지원 대상”이 되는 자

가. 가입자 요건 : “가입기간 있는”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

(1) 가입기간 있는 자 :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완납한 자

○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가입기간이 청산된 경우 제외

○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개시된 경우 제외

※ 실업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연금 수급 중인 자는 제외

(2)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

○ 가입자(가입종별 불문)

－ 사업장·지역 소득신고자 및 납부예외자 포함

－ 임의(계속)가입자, 외국인 포함

○ 가입자였던 자(상실사유 불문)

－ 타공적연금 가입·수급으로 제외된 자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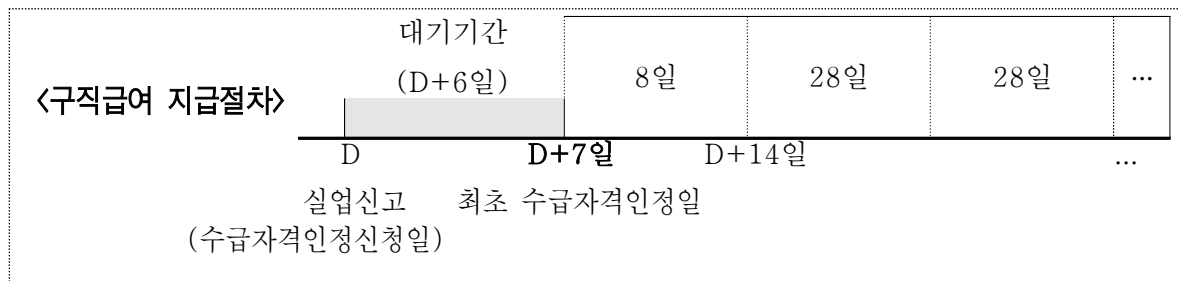
나. 구직급여 지급요건 : 「고용보험법」의 구직급여를 받는 자

(1) 적용대상

○ 법 시행일(2016.8.1.) 이후 직업안정기관(이하 ‘고용센터’)으로부터 “**최초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**”부터 적용

○ 수급자격인정일

－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(실업인정대상기간)의 시작일로 대기기간 종료일의 익일(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 없음)



## (2) 실업크레딧 대상이 되는 구직급여 수급기간

-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(소정급여일수) 중 실제로 급여가 지급된 날로 하되, 법 시행일 이후의 실업인정대상기간\*

\* (실업인정대상기간)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

## (3) 실업크레딧 대상이 되는 “구직급여 수급자”의 범위

## (가) 급여의 범위 : 구직급여, 연장급여

- 구직급여 :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였던 실직자(수급자격자)에게 “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”에 있었던 날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
- 연장급여 : 구직급여가 종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생계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연장하여 지급하는 급여

\* 연장급여 수급여부 결정은 구직급여 종료 전에 이루어짐

- 연장급여가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, 선행 지급된 구직급여가 실업크레딧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만 가능

## ○ 상병급여는 제외

※ 실업크레딧은 성실히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도임에 따라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

## (나) “수급자”의 범위 : 근로자(일용근로자 포함),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였던 자

## 다. 연령요건 :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

-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‘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’의 범위

\* 60세는 급여수급의 연령 상향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

## (1) 18세 생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지원

- 18세 미만 기간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18세 생일부터 지원

## (2) 60세 생일 전일까지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지원

- 60세 이후에 구직급여를 계속 지급받더라도 60세 생일 전일까지 지원

\* 예) 1965.8.20.생인 경우 2025.8.1. 수급자격 인정 받아도 2025.8.19.까지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되므로 누적 30일을 충족할 수 없어 실업크레딧 신청 실익 없음

## ② 지원 대상이 되는 자의 “재산 또는 소득”수준

### 가. 재산 및 소득의 범위

- (1) (재산)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, 건축물, 주택, 항공기 및 선박
- (2) (소득)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

### 나. 재산 및 소득의 보유수준

○ 아래의 재산 및 소득의 보유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

- (1) 재산기준 :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
- (2) 소득기준 : **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의 합이 1,680만원 이하**

\* 실업크레딧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액 재산가 및 고소득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

\*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32호(재산 및 소득의 보유기준) 및 제2016-221호(개정), 제2019-159호(개정), 제2022-179호(개정)

### 다. 재산 및 소득의 확인조사

- (1) 확인대상자 : 실업크레딧 신청인 본인
- (2) 확인방법 : ‘신청서 접수일’ 기준 확인 가능한 자료로 확인

○ (확인시점 및 확인자료) 신청서 접수일 기준 재산자료로 적격여부 판단하여 결정 (해당, 비해당) 통지서 발송 후 익월 소득자료 초과 여부에 따라 지원제외 통지서 발송

- (재산) 매년 1월 중 자료입수. 외부기관자료 연계이므로 입수시기 변동될 수 있음
- (소득) 매월 신규 신청자의 내역을 익월 마감일(10일)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회신받아 적격여부 확인

\* 신청년도에 대한 자료 입수되어도 사후 재확인 미 실시

○ (확인자료의 예외) 신청시 확인한 자료 이후 보유수준이 변동되었다고 주장할 때에는 객관적·공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적격여부 재판단

### 3. 연금보험료의 지원

#### ① 인정소득

가. (정의)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득으로 의제한 금액

-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  
=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

나. 산출방식

$$\text{인정소득} = \text{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}^* \times 30\text{일} \times 0.5$$

\*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(="기초일액") :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임금(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)

- 산출된 금액에서 천원 미만 절사

다. 인정소득의 범위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79호)

- 390,000원(영 제5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) ~ 700,000원

#### ② 연금보험료의 지원

가.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(인정소득  $\times$  9%)의 구성

- 연금보험료의 1/4 : 신청인 본인 납부(이하 “본인부담 연금보험료”)
- 연금보험료의 3/4 : 지원
  - (재원부담) 일반회계, 고용보험기금, 국민연금기금에서 1/4씩 균등 지원

나. 지원금액의 산정

- 연금보험료의 1/4에서 원단위 금액 절사 후 지원금액을 산정하고, 차액은 신청인이 납부해야하는 본인부담분에 합산하여 고지

$$\text{지원금액} = [(\text{연금보험료} \times 0.25) \text{의 원단위 절사금액}] \times 3$$

\* 각각의 지원 부담비율(25%)에서 10원 미만은 버린 금액으로 지원

다. “본인부담 연금보험료”(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)

-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뺀 금액

$$\text{본인부담 연금보험료} = \text{연금보험료} - [(\text{연금보험료} \times 0.25) \text{의 원단위 절사} \times 3]$$

## 4. 연금보험료 지원기간 및 지원방식

### 가. 1인 생애 “12개월까지” 지원

-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 시 구직급여 재수급기간도 신청 가능
  - － 1차 구직급여수급 시 1순위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
  - － 2차 구직급여수급 시 2순위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
- “12개월”의 판단기준
  - － 추가산입 12개월 기준 :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완납 12회(지원 12회)

### 나. 실업크레딧 “1개월”의 판단 기준

-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중 실제로 구직급여가 지급된 “누적 30일”
  - \* 국민연금법의 가입기간은 “월”단위로 산입됨에 따라, “일”단위로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를 월단위로 환산 필요
  - － 「고용보험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고 실업불인정(소멸 포함) 일수는 제외
  - － 동일 차수 내에서 “누적 30일”을 산정하고 남은 잔여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다음 차수의 구직급여 수급일수와 합산하여 “누적 30일”로 적용 불가
- 구직급여 수급 “누적 30일”이 될 때마다 실업크레딧 1개월 고지가 발생하고, 납부하는 경우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 1개월 추가산입

### 다.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 후 지원

- 해당 회차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회차를 지원
  - － 여러 회차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급지원
  - － 해당 회차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가 미납 또는 과소납되는 경우는 지원 제외
  - － 구직급여 누적수급 30일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고지 미발생으로 지원안됨

## 5. 실업크레딧 신청

- 
- ❖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 자격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    - 지원대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실업크레딧 신청가능
- 

### 가. 실업크레딧 신청서 접수기관

- 국민연금공단 : 관할지사 제한없이 모든 지사에서 접수·처리
- 고용센터(위탁기관) : “신청의 접수·처리”
  - “실업신고일(수급자격인정신청일)”과 “실업인정신청일”에 접수·처리 가능  
(그 외는 공단에서만 가능)

### 나. 신청서 접수

#### (1) 공단 접수시

- 신청서식 : “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”

#### (2) 고용센터 접수시

- 수급자격인정신청서 : 「수급자격인정신청서」 제출
- 실업인정신청서 : 「실업인정신청서」 제출

### 다. 지원신청기간

- 실업크레딧 신청 시 “지원횟수(최대 지원가능횟수)”로 신청
- 지원가능횟수
  - “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(=소정급여일수)”을 30일로 나눈 수  
예)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 경우 지원가능횟수는 8회
  - ※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(= ‘소정급여일수’)
    -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실업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120일~270일 가능

### 라. 신청기한 :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

- 구직급여종료일 :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종료일
- 구직급여 지급 중 재취업 등으로 구직급여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신청 기한까지 신청 가능

## 마.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

-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“해당·비해당” 결정
  - － 통지시기 : 전월 접수된 신청내역에 대해 신청인에게 당월 11일 통보
  - － 통지방법 : 월1회 본부에서 전자문서로 발송하되, 발송 실패건 우편발송
    - \* 신청인이 재발송을 원하는 경우 지사 개별발송 가능(전자문서, 우편)
    - \* 이메일 고지를 신청한 경우 이메일로 결정통지 발송(2017.7월 결정통지부터)
  - － 통지대상 : 실업크레딧 신청자 전원(고용센터 신청자 포함)
  - － 통보내용 : 실업크레딧 지원횟수, 인정소득, 본인부담 연금보험료, 지원금액 등 안내 및 실업크레딧 고지기준 등 관련 유의사항

## 6. “본인부담 연금보험료”

### ❖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특성

- 의무납부가 아니므로 연체금 미부과, 독촉,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 아님
- 부과·징수기관 :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
- 소득공제 : 신청인이 납부한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연금보험료

### ① “본인부담 연금보험료”의 고지

#### 가. 고지대상

- “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”이 발생하는 자
  - 前회차의 고지산정기간\*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전월 말일까지 지급된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“누적 30일”이상이 되는 경우
  - \* 고지산정기간 : 고지에 반영된 고지산정일수에 해당하는 기간

#### 나. 고지 금액

-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의 횟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 
(예) 소급신청자에 대해 고지 생성 시 지급된 누적 일수가 80일인 경우
  - 1, 2회차에 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합산고지

#### 다. 정기고지 발송(매월 11일경)

-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단위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고지
  - 소급분 발생으로 합산고지된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회차별로 고지 재발급 신청하여 납부가능

#### 라. 정기고지방법: 본부일괄 발송

- 고지방법 : 일반우편, 이메일, 전자문서, 이메일+우편, 이메일+전자문서 중 선택
-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(고지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)
  - 자동이체 출금 알림톡(LMS) 발송(D-1, 출금일자 및 출금예정액 표기)

#### 마. 고지횟수 : 해당순위의 지원횟수 내에서 고지

바. 납부기한 : 정기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

－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달 첫 영업일까지 납부가능

사. 미납시 납부할 수 있는 기한(이하 “납부유효기한”)

○ 납부유효기한 : 구직급여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

※ 납부유효기한이 지난 고지는 소멸되어 미납으로 보지 않음

## ② 징수권 소멸

○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공단의 권한을 일정한 사유발생시 소멸하게 함으로써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

○ 징수권 소멸 사유 및 사유발생일(법 제99조 제1호 및 2호 준용)

(1) 실업크레딧 신청 후 사망 : 사망일

(2) 실업크레딧 신청 후 반환일시금 지급 : 반환일시금 지급일

(3) 실업크레딧 신청 후 노령연금 지급결정 : 노령연금 지급결정일

※ 연금지급결정이 소급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소멸된 징수권이 부활하므로 납부유효기한 내 납부 가능

## ③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방법

가. 고지서 납부

○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OCR장표로 납부

나. 전자납부

○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여 인터넷지로·뱅킹, CD/ATM으로 납부

○ 실업크레딧 전자문서(모바일)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지로 연계 납부

－ 전자문서(네이버·MMS) 본인 인증 후 [인터넷전용납부서비스 바로가기] → 인터넷지로 웹페이지 수납

－ 모바일 앱(내 곁에 국민연금) 로그인 후 [실업크레딧 미납내역 조회 및 납부] → 미납월 선택하고 [인터넷지로 납부(계좌이체, 신용카드)] → 인터넷지로 웹페이지 수납

## 다. 자동이체 납부

### (1) 신청대상

- 원칙 : 실업크레딧 신청하는 본인의 계좌로 본인납 신청
  - 대납가능 : 배우자·자녀·부모 등에 의한 대납 신청도 가능

### (2) 신청서 접수 처리

#### ○ 제출서류

##### (가) 공단 신청 시

-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신청서(규정 서식)
- ※ 실업크레딧 신규 신청 시에도 자동이체 신청 가능

##### (나)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계좌로 자동이체 신청됨

-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유선
- 신청기한 : 매월 25일(D) 출금 적용기준
  - 접수마감기한 : 매월 접수마감일(D-5)까지의 신청(신규, 변경)입력 결과가 수신(D-3)되어 전산 처리된 경우
  - 해지신청 : 매월 출금파일생성일(D-3)까지 해지입력

### (3) 자동이체 출금

- 출금대상 : 전월 접수되어 입력처리 마감일(당월 10일)까지 정상처리 된 실업크레딧 신청 건에 대해 당월 25일 출금
- 유효기간 : 별도의 해지신청이 없는 한 납부유효기한까지 계속 유효
- 자동이체 출금 : 전액출금 원칙(부분출금 없음)
  - 미납분에 대한 추가 출금의뢰 없음
  - 납기일 은행영업 시간 내 입금분에 한하여 정상적인 출금 가능
- 자동이체 출금 알림톡(LMS) 발송(D-1, 출금일자 및 출금예정액 표기)
  - 통장인자 : “고지년월 실업크레딧”
  - 자동이체 당월 미납 시 다음 회차의 정기고지시 미납분 안내

### (4) 신청서 보관

- 신청일자별 편철하여 자체 보관
- 보존기한 : 자동이체 종료(해지)일로부터 5년
  - \*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함

## 라. 회차별 가상계좌(납부자 전용계좌) 수납

- 납부자별 “고지회차별 납부전용 가상계좌” 일괄 부여
  - － 고정가상계좌가 아닌 고지회차별로 각각 다른 가상계좌를 부여
    - \* (도입배정)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이자가산 없이 동일금액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가상계좌 수납 시 몇회차 납부인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고지 회차별로 가상계좌를 다르게 부여하여 수납확인 및 이중납부 방지
  - － (참여은행) 농협, KEB하나, 신한, 우체국, 기업, 부산, 대구, 전북은행
-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('24.2.1.)
  - － (참여은행) 주거래은행(우리은행)
  - － 주거래 은행과 공단 간 고지내역과 납부금액을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수납정보 반영\*
    - \* 징수원부 수납 반영까지 1~2분 소요
  - － 회차별 가상계좌 수납으로 보유 계좌 수 내에서 순환하여 사용
  - － (납부가능 시간) 연중 365일 납부 가능(단, 23:55~00:05 제외)
- 이용기간 : **납부유효기한**까지 납부 가능
  - － 수시고지 신청 등으로 가상계좌가 재발행되거나 해당 고지회차의 보험료가 수납된 경우 기존 가상계좌 소멸로 이용 불가
- 정기고지는 실시간을 포함한 1그룹 또는 2그룹 은행 필수 발행
  - － (1그룹) 우리(실시간), 농협, KEB하나 / (2그룹) 우리(실시간), 신한, 우체국, IBK기업
- 수시고지
  - － 고지서 발송(6개 은행 발행) : 우리(실시간), 농협, KEB하나, 신한, 우체국, IBK기업
  - － 가상계좌 등록 : 실시간 포함한 9개 은행 중 선택 발행

## 마. 신용카드 수납

- 카드 명의자(소유자) **지사방문 수납**(단, 법인카드 제외)
  - ※ 결제고객의 실명확인(가맹점(공단) 의무사항, 공단 보관용 영수증에 명의자 본인이 직접 “가입자와의 관계, 전화번호, 서명” 기재 필수
- 인터넷 지로 사이트 (<https://www.giro.or.kr>) 납부

## 바. 인터넷납부서비스(<https://anypay.nps.or.kr>) 수납(2019.12.1. 시행)

- 인터넷납부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